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강동구 의원】

- 서면질문서 제출
 - 2010년 1월 12일 제출
 - 2010년 1월 12일 시장에게 이송
- 서면답변서 제출
 - 2010년 1월 21일 시장 제출

□ 질 문

1. 최근 대설 경보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중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하여

가. 지난 1월 4일 부천시지역에는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부천시 전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하며 재설작업에 매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과 각 동별 자생단체원들이 재설작업에 여념이 없던 상황에서 원미구청장은 오찬장에서 낫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을 확인해본바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폭설로 인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재설작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근무중 술을 마시고 규정된 중식시간을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2. 부천시 노면 청소차량 수리비 관련하여

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면청소차량의 수리비가 2009년도에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그 원인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차량의 사용기간이 오래 될수록 차량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과거에 비하여 (3개 구청 모두) 50% 이하로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수리비 지출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년간 노면 청소차량의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세부사항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질문1》

- 최근 대설 경보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중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하여
 - 제설작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원미구청장의 근무 중 오찬장에서의 음주 행위와 규정된 중식시간을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킴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 변)

- 「지방공무원」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미구청장의 음주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행위가 있다면 위반정도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질문2》

- 부천시 노면 청소차량 수리비 관련하여
 - 차량의 사용기간이 오래 될 수록 차량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과거에 비하여 (3개구청 모두) 50%이하로 수리비가 지출 되었는바
 - 수리비 지출이 감소한 원인은
 - 최근 5년간 노면 청소차량의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세부사항 정리하여 제출

(답 변)

○ 차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한 구별 원인

구 별	감 소 사 유
원미구	1. 노면청소차량 6대중 3대(3750, 2627, 2630)가 2008년 10월에 구입한 새차로 대체하여 (9752, 9750, 9751) 수리비 감소 2. 기타 차량 3대(3386, 5635, 5640)는 노후, 고장부분에 대하여 2008년도에 수리하여 2009년에는 수리 부분이 줄어들었음 3. 2009년도에 기아A/S센터로부터 무상점검 10회 및 부천자동차검사소와 정기점검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어 각종 오일류 등 점검 서비스를 받음
소사구	1. 2008. 3. 18일자 노후차량(3751, 2668) 매각으로 인해 2009년도 수리비 감소함
오정구	1. 2008. 2월에 노후차량(3752) 폐차로 인하여 2007년에 비하여 2008년 수리비 및 2009년 수리비 감소

○ 최근 5년간 노면 청소차량의 수리비 지출내역 : “별첨”